

오픈뱅킹 구축과 핀테크 산업의 혁신*

연구위원 박선영

금융위원회는 2월 25일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모든 핀테크 결제회사가 합리적 비용으로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지급결제망은 자연독점적 성격을 지니며, 국내 지급결제망은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중심의 독점·공익기업형 모델로 구축되었다. 지급결제시스템 이용시장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시장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이다. 필수설비란 그 시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관련시장에서 어떠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해지는 시설을 일컫는다. 따라서 필수설비의 보유자는 경쟁업체의 공정한 접근, 이용을 허용해야한다는 것이 필수설비원리이다. 이는 영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가 2018년 1월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오픈뱅킹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핀테크산업은 기술적·소비자 경험적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하다. 핀테크산업이야말로 새로운 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고, 오픈뱅킹 구축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월 25일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인터넷과 같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져 왔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기업이 금융결제원 오픈 API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¹⁾ 본고에서는 이 방안의 배경과 취지를 국내 간편송금의 구조, 지급결제망의 특성, 그리고 필수설비원리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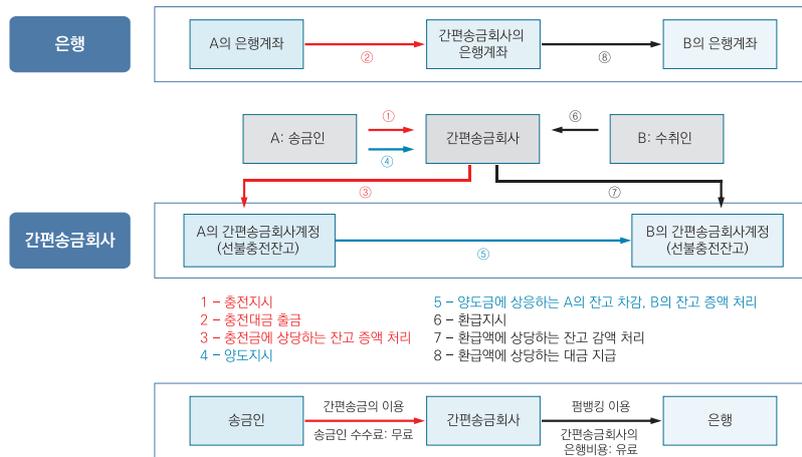
간편송금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2015년 3월) 등 보안규제가 완화²⁾됨에 따라 보안카드 또는 OTP(One Time Password)를 사용하지 않고 간편한 인증수단만을 이용하여 송금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간편송금은 비바리퍼블리카가 국내에서 최초로 서비스를 출시(2015년 2월)하였고, 이후 네이버(2015년 6월), 카카오페이(2016년 4월) 등이 참여하여 현재 7개사³⁾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한 통신 규칙이다.
 2)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폐지(2015년 2월), 국가 인증제품 사용의무 폐지(2015년 3월), 사전 보안성 심의 폐지(2015년 6월)
 3)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 쿠팡,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엘지유플러스, 핀크(금융감독원, 2018,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 현황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편송금 전체 이용금액은 2016년 2조 4,413억원, 2017년 11조 9,541억원, 2018년 27조 8,682억원(2018년 5월 추정치)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간편송금 이용고객은 20대 미만 9%, 20대가 58%, 30대가 20%로 구성되어 있다. 30대 이하가 전체 고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로 향후 이용금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 간편송금회사의 송금구조와 수수료 흐름



간편송금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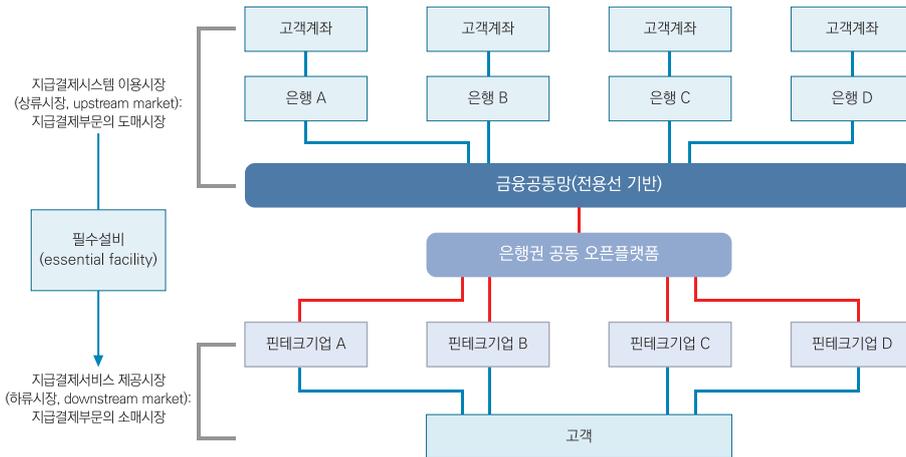
비바리퍼블리카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송금서비스를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하였다. 이는 출금과 이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출금은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만으로 가능하고, 이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동으로 가능하다. 간편송금회사들은 금융회사들과 제휴를 맺고 실시간 펌뱅킹을 이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후 이를 양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고객들의 송금지시를 수행한다(〈그림 1〉 참조). 간편송금회사들이 한 건의 송금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최대 500원대로 추정된다.⁴⁾

간편송금회사와 금융회사의 제휴는 개별적인 펌뱅킹(firm banking) 계약형태로 이루어진다. 펌뱅킹은 본래 통신료, 보험료, 신용카드사용료 납부 등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상거래를 처리하거나 기업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B2B로 제공되는 은행 서비스이다. 간편송금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간편송금회사들이 실시간 펌뱅킹 서비스를 대량으로 이용하면서 수수료가 과중하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2017년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수수료 지급액은 191억원, 2017년 지급액은 447억원이다. 전체 간편송금회사들이 은행권에 지불하는 펌

4) 금융위원회, 2019.2.25.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뱅크 수수료는 2018년 기준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에서는 은행권 펌뱅크 수수료 수입의 70~80%정도는 통신사, 보험사, 카드사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

〈그림 2〉 오픈 뱅킹의 구조



간편송금회사의 첫번째 진입장벽은 얼마나 많은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는가이다. 간편송금회사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송금인의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수취인의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각각 제휴를 맺어야하기 때문이다. 제휴를 맺지 않은 금융회사의 고객은 간편송금회사를 통해 송금지시를 내릴 수 없다. 또한 송금을 수취하는 수취인이 제휴를 맺지 않은 금융회사의 고객이면 해당 계좌로 송금이 불가능하다.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19개의 은행과 8개의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카카오페이의 경우 18개의 은행과 3개의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반면 핀크의 경우 KEB하나은행 한 개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2018년 5월말 기준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가 간편송금액의 약 96%를 점유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이다.

간편송금회사는 금융권의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의 송금지시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고객모집에 실패하게 된다. 이번 방안대로 은행권 공동결제시스템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송금지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면 후발업체들도 간편송금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쟁압력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것이다.

지급결제망의 특성과 필수설비원리

지급결제망은 네트워크산업으로 자연독점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국내 지급결제망은 한국은행

5) 2018년 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3.8조, 이자이익은 40.3조원, 비이자이익은 5.5조원이다.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이익은 4.8조원이다(금융감독원, 2019. 3. 4, 국내은행의 '18년중 영업실적, 보도자료).

을 중심으로 금융결제원의 독점·공익기업형 모델로 구축되었다.⁶⁾⁷⁾

한국은행(2008)에 따르면 이러한 독점·공익기업형 경쟁구도 하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쟁의 압력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시스템 운영의 공정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같은 공적 개입은 신규 사업자의 시스템 참가 보장 등 시스템에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 이용방식 및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방식 등 각종 정책목표를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급결제부문은 <그림 2>와 같이 상류시장(Upstream Market)인 지급결제시스템 이용시장(지급결제부문의 도매시장)과 하류시장(Downstream Market)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시장(지급결제부문의 소매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시장의 입장에서 지급결제 시스템은 필수설비이다.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란 그 시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관련시장에서 어떠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해지는 시설을 의미한다.⁸⁾⁹⁾ 이번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방안은 지급결제부문 소매업자들의 공동도매센터를 만들어서 상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열어주고, 도매센터와의 거래비용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데 있다. 영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오픈뱅킹(Open Banking) 정책을 2018년 1월에 실시하여 9개 주요 은행이 Open API를 의무적으로 채택하게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정책의 실행 주체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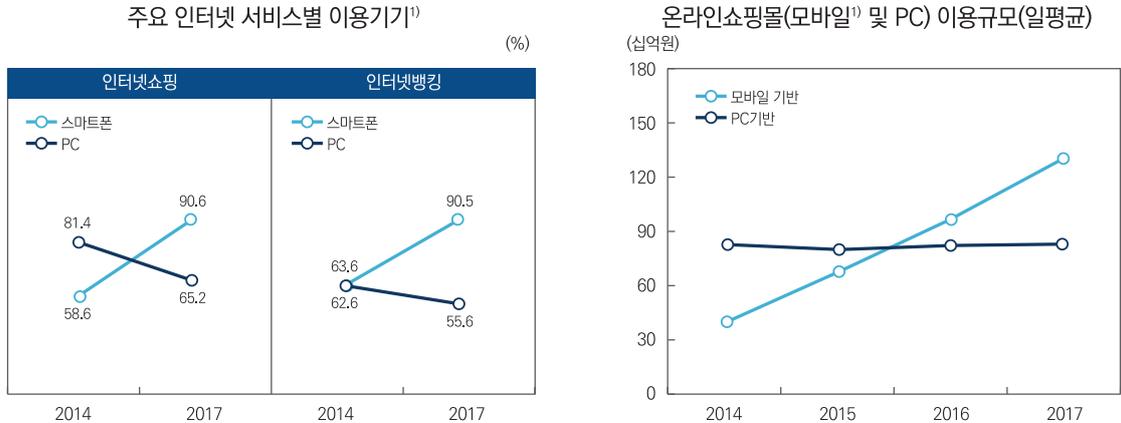
6) 지급결제부문의 경쟁모형으로 독점·공익모형, 시스템간 경쟁모형, 시스템내 경쟁모형이 있다(한국은행, 2008, 지급결제부문에서의 경쟁정책 운용현황).

7) 금융결제원은 1986년 6월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1980년대 정부가 추진한 5대 국가기간전산망인 금융전산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지급결제전문기관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원사업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회비로 운영된다. 2018년 4월에 발간된 금융결제원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기본회비 216.6억원의 20%는 한국은행, 80%는 사원 및 준사원이 부담한다. 또한 사원, 준사원 및 참가기관이 어음교환, 지로, 전자금융 등의 업무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실적회비인 사용료는 866.3억원이다.

8) 서은숙, 송민규, 윤지아, 김미혜, 2008, 증권산업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방향, 한국증권연구원 이슈&정책 06-01.

9) 특정시설이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설비의 보유자는 경쟁사업자에게도 접근, 이용을 허용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접근거절은 경쟁법 위반으로 규율된다. 미국에서 철도회사연합의 지역교통망 장악 시도에 대해 제기된 반독점소송(U.S. v. Terminal Railroad Association, 1912)에서 동 연합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자도 해당 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장한 이래, 필수설비원리(Essential Facilities Doctrine)는 확립된 판례법으로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한국은행, 2008, 지급결제부문에서의 경쟁정책 운용현황).

〈그림 3〉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증가



주 : 1) 복수응답, 응답자 중 해당기기 이용비율
 자료: 한국은행, 2017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재인용

주 : 1)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의 모바일 기기
 자료: 한국은행, 2017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재인용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혁신

국내 금융산업에서 유일한 유니콘으로 분류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등장은 고무적이다. 현재까지 비바리퍼블리카의 누적 투자액은 약 2,300억원, 현재 기업가치는 1조 3,500억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기업들의 절대다수는 시장규모가 국내(5,181만명)의 약 6배~27배에 이르는 미국(3억2,909만명), EU(5억1,260만명), 중국(14억2,006만명)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비바리퍼블리카의 성과는 그 자체로 혁신적이다. 국내에서 과거 5년간 등장했던 혁신적인 소매금융서비스의 대부분은 비바리퍼블리카가 최초로 상용화하였다. 이 기업이 상용화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는 송금방식, 출금이체동의를 위한 점유계좌인증 방법, 소비자경험(UX, User Experience) 및 유저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등은 후발업체에서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제공하는 사용자 경험은 글로벌 핀테크기업과 견주어 손색이 없으며, 글로벌 핀테크 소매금융서비스 중 국내에서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서비스도 드물다

기술혁신이 가장 빠르게 침투한 서비스영역은 금융산업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금융이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이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은 1988년 CD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989년 타행환공동망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01년에는 전자금융공동망을 가동하였으며, 2005년에는 은행공동의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10년 스마트폰이 국내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된 이후 해마다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및 지급결제서비스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그림 3〉 참조). 2017년부터 모바일 광고시장 규모는 인터넷(PC) 광고시장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¹⁰⁾ 글로벌

10) 온라인광고(인터넷(PC), 모바일) 규모는 2018년 총 5조 5,133억원으로 전체 광고시장 13조 6,836억원의 40.3%를 차지하며, 이미 방송광고 규모인 4조 1,577억원을 넘어섰다. 모바일광고는 인터넷(PC)광고를 2017년부터 앞서기 시작하여 현재 온라인 광고의 약 65%인 3조 5,978억원은 모바일로 집행되고 있다. 2018년 모바일광고는 지상파TV광고 규모의 2.4배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

금융기관 혹은 핀테크기업들은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모바일 기반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Monese(2015년 설립), Monzo(2015년 설립), Revolut(2015년 설립), Starling bank(2017년 설립), 독일의 Centralway numbrs(2014년 설립)는 모바일 기반(Mobile-only)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의 N26(2015년 설립)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주력 서비스는 모바일이다. 이처럼 금융서비스, 특히 지급결제 서비스의 변화속도와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법과 규제가 기술혁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의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기존 산업에 참여하는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졌을 때이다. 모빌리티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혁신기술이 기존 노동을 대체할 때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혁신은 더딜 수밖에 없다. 반면 금융서비스에서의 혁신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번 논의는 금융권의 사적재산이면서 동시에 공적 성격을 가진 인프라에 대한 공유방식에 관한 것이다. 방향성은 사회 전체의 후생이 어떠한 때 증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금융산업은 타산업에 비해서 새로운 혁신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기

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